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제노동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 신설 및 허가취소
규정 정비 등 〉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6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강제노동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 신설 및 허가취소 규정 정비	3
2. 지원금 환수 요건 명확화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 강요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염전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는 실정임.

특히 2014년, 2021년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 2023년에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10년간 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등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

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 제49조의2).

Ⅲ. 검토의견

1. 강제노동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유 신설 및 허가취소 규정 정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한 사유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현행법 제26조(허가취소) 중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 (생략) <u><신설></u>	제24조(허가의 제한) ----- ----- ----- --. 1. 2. (현행과 같음) 3.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3. 임원 중에 <u>제1호나 제2호</u>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u>제4호</u>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u>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u> ② (생략)	<u>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4. ----- <u>제1호, 제2호, 제3호</u>---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 ----- ----- ----- ----- ----- ----- <u>제4호</u>-----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1) 「소금산업 진흥법」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 강요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는 실정임.

- 현행법의 허가 제한·취소 등의 체계를 살펴보면, ①염전을 개발하는 자, ②염전에서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③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²⁾하면서(제23조), 허가제한 사유 및 대상³⁾으로 ①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2. 염전에서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소금산업 진흥법」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⁴⁾로는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③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⑤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를 규정함.

□ 최근 염전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업 분야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폭행이 수산물 수출 금지 등 무역 제재로 이어질 우려⁵⁾가 있으므로,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소금산업 진흥법」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5) 미국은 2026년 7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도 강제노동 결과물의 역내 시장 출시·수출을 금지하는 규정(Regulation (EU) 2024/3015)을 2024년 12월 12일 발효시켜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최근 5년간('22년 ~ '26년) 수산분야 강제근로(외국인 포함) 적발 현황 >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금지), 제8조(폭행의금지)

(기준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연도별	위반건수	관할관서	업종	피해자 국적	적발내용
2022	1건	서산	어선	한국인	제8조(폭행)
2023	1건	군산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4	4건	군산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여수	어선	미상(익명)	제8조(폭행)
		여수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여수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5	1건	목포	양식	외국인	제8조(폭행)
2026.6	2건	광주	염전	한국인	제7조(강제노동)
		광주	염전	한국인	제8조(폭행)

※ 고용노동부 제공, 해양수산부 작성·제출

<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강제노동 관련 조항 >

근로기준법	선원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총톤수20톤 미만의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근로기준법」 적용	총톤수20톤 이상인 어선의 선원과 선박소유자 → 「선원법」 6) 적용

6)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

이에 허가의 제한 사유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정안 제24조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26조는 신설되는 안 제24조제3호와 현행법 제26조제1항제6호가 중복됨에 따라 현행법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소금제조업 등에 대한 허가 취소시 강제노동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4조제3호(허가의 제한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허가의 제한사유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음.

실제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다수의 가해자(공범)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⁷⁾가 확인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집

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3.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허가의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집행이 종료·면제된 자와 별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는 다수의 입법례⁸⁾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수의 공범은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제한 사유의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허가 제한사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염전근로자 강제노동 사건 관련 확정판결 현황(해양수산부 자료)

- ① 2014년 신안군사건 : A업주(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B업주(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C업주(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D업주(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② 2021년 신안군사건 : A업주(징역 5년), B공범(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C업주(징역 2년)

8) [유사 입법례]

「해운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각 호 생략)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둘째, 개정안은 벌금형의 하한액을 두지 않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모두 허가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결격사유의 명확성 제고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관련성이 높은 법률 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이 「행정기본법」 제16조의제2항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자유형과 벌금형을 나누어 서로 다른 호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도의 준범의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의 일반원칙¹⁰⁾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강제노동·폭행 관련 제재의 수준에 대해서는 ①벌금형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하한을 두거나, ②금고 이상의 형과 벌금형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호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에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할 경우 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9)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한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372~373

필요가 있음.

경합범에 대하여는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하여 경합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특정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결격사유에 규정된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원칙이라는 의견¹¹⁾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 벌금형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관련 형의 분리 선고 입법례 >

「유아교육법」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¹³⁾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373

12) 현행법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는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2조제6호를 신설할 경우 분리 선고 인용 조항에 제12조제6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①결격사유를 구성하는 형벌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벌금형”의 3단계로 구분¹⁴⁾하고, ②벌금형의 최소기준액을 500만원¹⁵⁾으로 정하며, ③결격사유에 벌금 이상의 형을 포함할 경우 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의견¹⁶⁾을 제시하였음.

13)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4) 현행 「수산업법」 제9조 제3호,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제5호 규정과 같이 3단계로 구분 반영 (해양수산부 의견)

15) [해양수산부 의견]

(벌금 최소 기준액)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벌금액은 5천만원, 그 10%인 500만원을 최소 금액 설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관련, 현행 「수산업법」 제9조 제3호와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제5호 벌금 최소 기준액은 100만원

수산업법(제108조), 수산자원관리법(제65조) 등의 일반 위반행위 벌금 상한 1천만원의 10% 수준(무허가 어업·수산물 채취는 3천/2천만)

16) [해양수산부 의견]

(분리선고 일괄 반영) 다른 법률 위반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의 결합에 따른 벌금액 증가 등으로 부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황 방지 필요 → 분리 선고 규정 일괄 마련

* 현행 「수산업법」(제10조), 「양식산업발전법」(제12조의2)는 해당 법률이 아닌 수산관계법령 위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되, 분리 선고 규정 有

□ 다음, 안 제26조제1항제6호(근로강요행위 관련 허가 취소 사유) 삭제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6조제1항제6호 삭제로 인하여 형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할 근거가 상실되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형의 확정 이전에도 허가취소·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강제노동 관련 위반과 관련하여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제3호(형의 확정 및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을 통해 허가취소·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강제노동 관련 염전근로자 보호의 적시성을 고려할 때 형 확정 이전의 대응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개정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법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기보다는 처분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현행법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할 경우 형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신속한 행정조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제26조제1항제6호를 “「근로기준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¹⁷⁾을 제시함.

17) 해양수산부는 허가취소·영업제한·정지는 업종별 현직 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종 관련 법률만 구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 지원 자금의 환수 요건 명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49조의2 조제목을 지원 자금의 회수로 변경하고, 지원된 자금의 환수 사유를 현행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에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49조의2(지원 자금의 회수) ①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자금 환수 요건을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을 제시함(「소금산업진흥법」과 관련이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만 명시)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하고 있는데,

지원된 자금의 환수 요건을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을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49조의2 조제목의 “회수”와 본문의 “환수”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조금 또는 지원금에 대한 “회수” 또는 “환수”라는 용어는 법률에 따라 혼용¹⁸⁾되고 있는데, 현행법 및 하위 법령¹⁹⁾은 “환수”라는 용어

18) [“환수”로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해운법」

제41조의2(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회수”로 사용하고 있는 입법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9) 「소금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 제목을 “지원 자금의 환수”
 루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자금 환수 관련 벌금형의 최소 기준액을 결격사유와
 마찬가지로 500만원²⁰⁾으로 정하고, 자금 환수는 업종별 현직 업자
 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금산업진흥법」과 관련이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²¹⁾.

문 의 처
02)6788-5419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
 부로 한다.

20) [해양수산부 의견]

(벌금 최소 기준액)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벌금액은 5천만원, 그 10%인 500만원을 최소
 금액 설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관련, 현재 「수산업법」 제9조 제3호와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 제5호 벌금 최소
 기준액은 100만원

수산업법(제108조), 수산자원관리법(제65조) 등의 일반 위반행위 벌금 상한 1천만원의 10% 수준(무허
 가 어업·수산물 채취는 3천/2천만)

- 21)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발의하려는 의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지만, 재정소요와 관련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
 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추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국
 회예산정책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2021. p.30.).